

제 1 조 (목적)

본 규약은 '엘림존'이 관리하고 '엘림아트센터'(이하 '공연장'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엘림홀과 챔버홀 및 그 부속시설설비(이하 공연장과 함께 '시설'이라 한다)의 대관 및 그 사용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공연장'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관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및 관련 부수행위 등을 위하여 '공연장'의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공연장'의 대관승인을 받아 '공연장'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기획사 또는 연주자를 말한다.
3. '공연장'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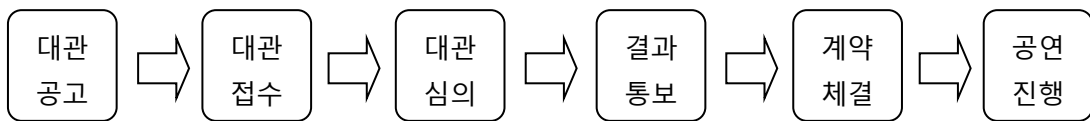
제 3 조 (대관의 종류)

1. 대관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연습대관, 녹음대관 그리고 공연 목적 이외의 방송촬영·강연·행사 등을 위한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또한,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2. 정기대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공연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 승인, 확정한다.
3. 수시대관은 공연일정 중 취소 등으로 인하여 잔여 일정 발생 시 가능하다.

제 4 조 (대관절차)

1. 대관절차

대관자는 '공연장'이 정한 시기에 엘림아트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elimartcenter.co.kr)를 통해 게시된 절차에 따라 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



2. 공연장은 원활한 공연 공연진행 및 공연질서 유지를 위해 대관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근거하여 대관자의 대관신청을 제한 또는 승인된 공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조 (대관료)

기본시설 대관 (2020년 기준)

(단위 : 원/부가세 별도)

구분	기본대관료	추가 리허설 (1시간)	비고
엘림홀	1,400,000	180,000	
챔버홀	800,000	100,000	
하우스홀	400,000		

1.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공연장'이 정한다.
2. 공연대관의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에 '공연장'이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을 계약일 이전에 납부해야 하며 대관료 잔금은 대관일로부터 50일 전까지 납부한다. 단, 잔금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 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는 공연시작일 전일까지 납부한다.
3.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연장'의 판단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100% 반환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이란 전쟁, 지진 등 법에서 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 ②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100% 반환
 - ③ 세부 취소규정 및 환급기준은 엘림아트센터의 대관규약에 따른다.
 - 3-1.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대관 취소하는 경우 : 50%반환
 - 3-2.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로부터 59일 이내에 대관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불가
 - 3-3.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관 취소하는 경우 : 대관료 전액 납부

제 6 조 (공연시간)

1. 공연시간은 '공연장'과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 1일 2회 공연이 있는 경우, 공연 및 연습시간은 반드시 '공연장' 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 7 조 (대관신청)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별도양식참조)와 '공연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의 경우, 공연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2.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시설 사용신청은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별도양식)로 같음한다.

제 8 조 (대관심사 및 승인)

1. '공연장'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인에게 '대관승인서'로 통보한다.
2.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공연장'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공연장'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대관 승인 기준)

1. 대관승인 기준은 '공연장'이 공연장 운영실태 및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한다.
2. 공연장의 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일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 단체 및 기획사 순을 원칙으로 대관한다.
 - ② 전년도 공연 시 '공연장'과의 대관계약 및 대관규약을 위반한 단체는 차기 대관을 할 수 없다.
 - ③ 기타의 경우에는 '공연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0 조(대관 신청 제한, 승인 취소 및 사용 중지)

1. '공연장'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① 대한민국 헌법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② '공연장'의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공연장'의 시설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③ 제 2항에 의해 사용이 정지 중인 자의 신청
- ④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 ⑤ 학생, 아마추어 단체 및 개인(단, 개인이라 하더라도 천재적 소질이 인정되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의 신청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연장'은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① 대관승인 후 제 7조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② 본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③ 본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④ 공연장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 ⑤ 본 규약을 위반한 때

제 11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 12 조 (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1.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내용 (공연명, 출연자, 공연내용, 주최자 등)을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연장'은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2.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공연장'이 정한 양식(별도양식참조)에 따른다.

제 13 조 (공연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연시작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절차를 거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될 수 있다. 일정의 변경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연 일의 해당년도 안에 가능한 일정이 있을 시에만 가능하다.

제 14 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1.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악기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할 수 없으며,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및 로비,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공연과 관련된 시설물을 무대에 설치할 경우, 방염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3. 대관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5 조(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3. 대관자는 무대 및 객석, 로비공간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4. 대관자는 '공연장'이 정하는 시설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대관자는 부속시설(대기실 집기, 비품 등) 파손 시 '공연장'이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6. '공연장'은 대관기간 중(공연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시설 이용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공연장'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7. 대관자는 '공연장'이 어떠한 제 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공연장'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공연장'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16 조(입장권의 발행)

1. 입장권의 발행은 '공연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입장권 발행 전에 대관자는 대관료 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 ①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다.)
 - ② 공연 전 입장이 원칙이며 공연이 시작된 후에는 공연장의 안내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 ③ 공연장 안에서는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촬영 및 녹음은 할 수 없습니다.
 - ④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은 객석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⑤ 휴대용 전화기의 전원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 ⑥ 공연장내에 화환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입장권은 객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4.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공연장'은 교환권에 의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7 조(방송 및 판촉 등)

1.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공연장'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의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해서는 '공연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입장권은 '공연장'에 보관시켜야 한다.
2. 공연 중 판촉, 사인회, 이벤트 등 부대행사를 계획할 때에는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연 당일 고지 시 승인 불가)
3. 리셉션을 개최코자 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정된 장소만 사용이 가능하다. (리셉션 장소사용은 부대시설 신청서 참고)

제 18 조 (소정양식)

대관에 필요한 모든 서식은 '공연장'이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 19 조 (공연진행의 정의)

'공연진행' 이라 함은 공연 준비 기간을 포함한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 사항을 말한다.

1. 공연당일의 진행은 티켓부스가 오픈되는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2.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공연장'의 하우스매니저와 무대감독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요청에 모두 응해야 하며, 객석관리와 무대관리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우스매니저 또는 무대감독은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3. 공연이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관객의 중간입장은 중간휴식 및 공연종료시까지 없는 것으로 한다.
4. 중간입장이 필요한 경우 대관자는 하우스매니저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간입장이 공연진행 및 관람에 방해가 될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중간입장을 통제하거나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5. 청소, 냉난방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객석관리와 공연진행 및 객석 안전관리는 공연장 하우스매니저가 확인한다.
6. 엘림아트센터의 자료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공연 관련 자료를 공연 시작 3시간 전까지 제출한다. (규시트 3부, 프로그램 5부)
7. 공연포스터는 지정된 곳에만 부착이 가능하며, 객석과 로비로의 화환 반입은 금한다.
8. 공연 중 무대전환은 대관자 측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연장'의 악기 전환은 예외로 한다.
9. 대관자는 리허설과 공연 시에 하우스매니저, 무대감독과 사전 협의한 스태프 확인증 또는 출연자 전체리스트를 무대기술파트에 제출하고, 출연자 출입구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 받으면 이에 응해야 하며, 그 후 객석이나 대기실, 백스테이지로의 출입이 가능하다.
10. 대관자는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추후 대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① 공연장 객석 수를 초과하여 관객이 올 가능성이 높은 행위 유발, 또는 방치
 - ② 미취학의 입장 및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중간입장을 증용하여 로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11. 공연 실황 영상은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진행되지 않는다. 영상 파일을 원할 경우, 사전 신청을 필수로 한다. 녹음자료의 보존기간은 60일이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60일이 지난 공연에 대하여 이전에 제작된 영상 및 녹음 결과물(예: DVD, CD 등)에 대해서는 '공연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 20 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공연장'과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1 조 (규약변경)

1.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공연장'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연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접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전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 22 조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공연장'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23 조 (협조의무)

대관자는 본 규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공연장'의 요청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한다.

제 24 조 (관할법원)

본 규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연장'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5 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26 조(적용시기)

본 규약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엘림아트센터

www.elimartcenter.co.kr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78 (경서동, 엘림존), 6층

대표전화 032) 289-4275